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 부여〉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00880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I. 개요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희용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6. 24.

(3) 회 부 일 : 2024. 6.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이라도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한 경우이어야 함.

이로 인해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밖에 없음. 그 결과, 장애인 간 활동지원 급여를 두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Ⅱ. 검토의견

1. 양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고령 중도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을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2호).

현행	개정안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2. ----- ----- ----- -----.
가.·나. (생략)	-----. 가. (현행과 같음)
<신설>	나.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아 이로 인해 혼자서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신설>	다. (현행 나목과 같음)
3. (생략)	

2. 검토의견

□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¹⁾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²⁾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³⁾,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등 일정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이 되더라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는데, 이는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 기존 활동지원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2월에 개정된 사항임.⁴⁾

□ 즉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노인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가질 수 없음.

- 이로 인해 장애를 가진 노인일지라도 ‘장애 발생시기’에 따라 수급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가.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이란 6세 이상인 사람

4)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93호, 2020. 12. 29., 일부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106064호)

할 수 있는 급여 종류가 활동지원급여 혹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로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장애 발생시기와 무관하게 65세 이상 고령 중도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① 활동지원급여(월한도액 최고 7,754,000원[1구간])와 장기요양급여(월한도액 최고 2,069,900원[1등급]) 간 급여량 차이가 크다는 점,

< 활동지원급여 및 장기요양급여 월한도액 비교 >

구분	활동지원급여 월한도액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 월한도액
1구간(등급)	7,754,000원	2,069,900원
2구간(등급)	7,269,000원	1,869,600원
3구간(등급)	6,785,000원	1,455,800원
4구간(등급)	6,301,000원	1,341,800원
5구간(등급)	5,816,000원	1,151,600원
6구간	5,332,000원	-
7구간	4,845,000원	-
8구간	4,362,000원	-
9구간	3,878,000원	-
10구간	3,393,000원	-
11구간	2,909,000원	-
12구간	2,424,000원	-
13구간	1,940,000원	-
14구간	1,456,000원	-
15구간	971,000원	-

자료: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⁵⁾, 재구성

5)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0380&zoomSize=\(최종검색일, 2024.7.1.\)](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0380&zoomSize=(최종검색일, 2024.7.1.))

②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 기존 활동지원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2월, 개정된 같은 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수급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간 목적 및 지원 대상, 재원의 차이, 추가적인 재정소요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 수용이 곤란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의견임.(참고자료 1: 장애인활동 지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교)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⁶⁾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⁷⁾
-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준, 신규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장애인은 48,592명으로 이들이 개정안에 따라 신청자격을 가지게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약 9,716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참고자료 2: 개정안 관련 장애인 현황).⁸⁾

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 「노인장기요양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8) '24년 단가 기준, 기본급여만 계산 시 48,592명 × 16,150원 × 12개월 × 67%(평균국고보조율) × 154시간(평균수급시간)=971,659,432,128원 다만, 활동지원급여는 이 인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정확한 추가재정소요를 추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장애인 및 노인 관련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장애인 관련 지원은 노인 관련 지원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만 65세 미만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전 서비스 진입 시에만 장애인 관련 지원의 대상으로 인정함.⁹⁾

- 스웨덴: 65세 미만이 활동지원급여 대상이며, 노화로 인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대상에 포함
- 호주: 65세 미만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한 사람이 65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지속 지원하되, 65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

□ 아울러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관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65세 도달 시점부터는 장애발생 시기, 활동지원급여 수급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신청자격을 인정하되, 경제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이 다소 감소하는 연령인 점을 고려하여 그 급여액을 감소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임.

9) 보건복지부 제출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노인과 장애인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재원(일반회계 또는 보험료) 등의 지원체계상 차이, 재정소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보험 대상(65세 이후 장애 발생자)을 활동지원제도(일반회계)로 지원하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수용 곤란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비교>

구분	장애인활동지원('11년 ~)	노인장기요양보험('08년 ~)
목적 (법률)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제도 취지	○ 장애인에게 <u>일상생활 + 사회생활</u> 을 지원	○ 고령·노인성 질병 등의 노인에게 <u>일상생활</u> 을 지원
신청 자격	○ 6~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65세 이후 장기요양 전환자 보전급여 지급 *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보전급여 지급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급여내용	○ <u>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u> *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없음	○ <u>재가급여</u> :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등 ○ <u>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u> (가족요양비 등)
재정	○ <u>일반회계 예산, 의무지출</u> ○ 2조 2,846원('24년, 국비) * 예산상 편성인원 12만 3,715명	○ <u>독립회계(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u> ○ 13조 6,966억원('23년 지출, 현금흐름기준)
대상자 수	○ 15만 1,259명('23.12월 기준)	○ 109만 7,913명('23.12월 기준)
급여량 (시간)	○ 활동지원 구간별(1~15구간) - 월 60~480시간(97~775만원)	○ 인정조사 등급별(1~5등급) - 월 63시간~124시간(115~207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2: 개정안 관련 장애인 현황〉

구 분	장애인 현황		
연도	2021	2022	2023
신규 등록장애인 수	86,957명	79,757명	86,287명
신규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장애인 수	47,902명	44,560명	48,592명

자료: 보건복지부